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2021 임시총회 회의록



- 일 시 : 2021년 4월 27일(화), 10:00~17:00
- 장 소 :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서면결의)
- 참석자 : 재적인원 총 179명 총 120명(참석 106명, 위임 14명)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해 2021년 임시총회 서면결의진행
- 정기총회 안건 서면결의(민법제73조제2항) 진행
 - 서면결의서 기재내용(결의요지 / 의안별 가결 · 부결 표기, 회원 자필서명)

■ 의 안

- 제1호 임원임면보고
- 제2호 정관개정
- 제3호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 개회 (10:00)

- 성원보고 - 생략
- 회순채택 - 생략

■ 전차회의록 처리 - 서면결의

서면결의 결과	가결	부결
	120명	0명

-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처리됨.

■ 제1호 의안 : 임원선출

- 2021년 4월 16일 3명의 사임임원과 4월 16일 3명의 신임임원이 선임되었으며, 정관 제18조(임원의 선임), 제26조(총회 의결사항) 5항에 의거 총회에서 인준함.

1) 사임이사(~2021.4.16) 총 3인

이진완, 서동호, 황선인

- 신임이사(2021.4.16.~2024.4.15) 총 3인

김양희, 심효선, 박재희

서면결의 결과	가결	부결
	120명	0명

-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처리됨.

■ 제2호 의안 : 정관 개정(안)

- 용인시청 「복지정책과-57924(2020.12.31.) 2020년 협의체·협의회·사회복지법인 혜린 및 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통보」에 따른 정관 개정
- 경기도청 「복지정책과-583(2021.1.11) 사회복지법인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처분 등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알림」에 따른 정관 개정
- 법률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상위법(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일부 내용을 정관 제55조(정관변경), 제26조(총회 의결 사항)에 의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함.

변경전의 정관조문	변경후의 정관 조문	변경사유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용인시 내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41 메디슨타워 B209호, B210호 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주된 사무소를 도로명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제18조(임원의 선임)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3.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u>⑥ 선임된 임원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제18조(임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u>⑥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등기에 등재하여야 한다.</u>	경기도 법인지원팀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제26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4. (생략) <u>5.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u> 6~9. (생략)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4. (현행과 같음) <u>5.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u> 6~9. (현행과 같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이사회의 기능중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이 심의결정 되어야 한다. (임원의 임면의 관한 사항)
제33조(이사회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6. (생략) <u>7. 사회복지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u> 8~9. (생략)	제33조(이사회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6. (현행과 같음) <u>7. (삭제)</u> 8~9. (현행과 같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사회복지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음.

<p>제35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p> <p>① (생략)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p>	<p>제35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p> <p>① (현행과 같음) ② <u>삭제</u></p>	<p><u><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u> <u>별도내용이 없음</u></p>
<p>제37조(의결권대리행사)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과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② 대리인은 다른 이사 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단체의 임직원 이여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수 있는 이사의 수는 1인에 한한다.</p> <p>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제37조 (의결권 대리행사)</u></p> <p>① <u>삭제</u> ② <u>삭제</u> ③ <u>삭제</u></p>	<p><u><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보건복지부지침) p26.></u> <u>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 할수 없고,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음</u></p>
<p>제42조(사회복지연구소) ① 이 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이 회의 부설 사회복지연구소를 둘 수 있다.</p> <p>② 사회복지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p>	<p><u>제42조(사회복지연구소)</u></p> <p>① <u>삭제</u> ② <u>삭제</u></p>	<p><u><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정관></u> <u>사회복지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음.</u></p>
<p>제43조 (자산의 구분) 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p>	<p>제43조 (자산의 구분) ① 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p> <p>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p> <p>1. 별표 제1의 목록의 재산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p>	<p><u><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u></p>
<p>제46조(회계의 구분 등) ①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p> <p>② 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사</p>	<p><u>제46조(회계의 구분 등)</u> ①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p> <p>② 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사</p>	<p><u><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u> <u>회계의 구분은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란 구분은 없음</u></p>

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 처리 기준을 따른다.	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른다.	
제49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회의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매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9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회의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당해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 에 작성하여 매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보건복지부지침) >
신 설	<p>제3장 임원</p> <p>제21조의2(임원의 해임) ① 이 회는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자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p> <p>② 이 회는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p> <p>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할 때</p> <p>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의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p> <p>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p> <p>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p>	<p><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보건복지부지침) ></p> <p>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누락</p>

(표1)(신설 2021.2.26.)

기본재산의 목록(제43조 제2항 제1호 관련)

1. 정기예탁금 : 5,000,000원

서면결의 결과	가결	부결
	120명	0명

○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처리됨.

■ 제3호 의안 :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 제26조(총회 의결사항) 7항에 의거 기본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받고자 함.

- (前) 사무실 임대보증금 5백만원, 4월 16일 2차 정기이사회에서 정관 제33조 2항에 따라 기본재산 유지관리 방안으로 정기예탁금 전환으로 결의되어, 총회에서 심의·의결 받고자 함.

서면결의 결과	가결 120명	부결 0명
---------	------------	----------

○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처리됨.

■ 2021년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임시총회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 결과 모두 가결되었음.

2021년 4월 27일

사회복지법인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성규 (인)	이사 곽근배 (인)	이사 오현석 (인)
부회장 윤상형 (인)	이사 김명숙 (인)	이사 유경석 (인)
부회장 김선구 (인)	이사 김종필 (인)	이사 이규수 (인)
부회장 박원 (인)	이사 김진희 (인)	이사 이선덕 (인)
부회장 박수철 (인)	이사 박금란 (인)	이사 이재호 (인)
부회장 안성준 (인)	이사 박원환 (인)	이사 주관우 (인)
부회장 오영희 (인)	이사 박준상 (인)	이사 최재옥 (인)
	이사 서계현 (인)	

확인 사무국장 김봉주 (인)



기록 팀 장 이수민 (인)

